

함께하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

2011년도 첫 시행

「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2011. 5

중 소 기 업 청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목 차

I. 시행계획 공고	/ 1
II. 설명회 자료	/ 9
1. 사업개요	/ 9
2.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20
3. 온라인 신청요령	/ 33
III. 사업신청 관련서식	/ 41
<붙임 1> 산업기술분류표	/ 93
<붙임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10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131호

'11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2011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 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개요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협동조합이 발굴하여 기술개발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 30억원(자유응모형)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5% 이내)

■ 지원내용

- 동종 및 유사 업종의 다수 기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통 기술·제품·공정혁신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주관기관 25%이상 부담)
- 개발기간 : 1년 이내
- ※ 기술개발 결과물은 주관기관인 협동조합에 귀속되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기술개발지원제외 업종의 협동조합은 제외)

* 타부처 승인 중소기업관련 조합의 경우도 사업 참여 가능

* 단, 결과물 적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참여기업 반드시 참여**

< 기술개발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91249	기타겜블링 및 베팅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이용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96112	두발미용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미용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96119	기타미용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21	욕탕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22	마사지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912	가정용세탁업
	56193	치킨 전문점		96913	세탁물공급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56132	이동 음식점업		96922	화장, 모지분양 및 관리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991	예식장업
	56211	일반유희 주점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56212	무도유희 주점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56219	기타 주점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기관의 회원사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 및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조합	조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기부등본, 조합원 명부 등
	기술개발관련 현황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관련 현황(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 ▪ 과제참여 관련 조합 이사회(또는 조합 내 기술위원회) 의결서, 조합원 참여 수요조사 등 ▪ 네트워크 구축 정보(협약서, 공동기술개발 실적, 대학·연구소와 기술협력 관련 증빙서류 등)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참여 기업	최근년도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R&D 투자비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술개발 관련 현황(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3.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신청기간 : '11년 5월 16일(월) ~ '11년 6월 15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협동조합공통기술개발사업)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문서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⑧호]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주관기관, 참여기업 전체 현황 작성)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 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 파일 업로드	공 통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④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⑤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⑦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천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시)				해당시
⑧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⑨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4. 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6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추천대상 과제 선정

■ 대면평가 (6~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 과제 선정

■ 현장평가 (7월)

- 수행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한 신청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 선정

* 수행기관 준비사항 : 신청자격 관련 서류, 재무제표,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지원과제 선정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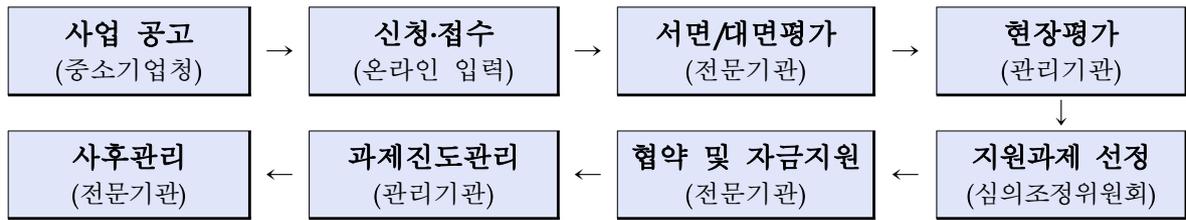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 및 현장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8월)

- 최종 확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부담금 납부를 완료 후 정부지원금(포인트)을 지급

< '11년 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5.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운영요령 제37조에 의거 기술료 징수 면제

6.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 해당
- ※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과 창업 2년 이상의 참여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주관기관이 휴면조합, 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 세금 체납중인 조합
- ② 참여기업의 부도, 휴·폐업
-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④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단,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7. 기타 공지사항

-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시 기술개발 과제 발굴에 관해 조합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할 기술의 보급·확산 계획을 수립(평가시 반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개발기술의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기술료 사용 계획과 징수결과를 보고해야 함
 - * 협동조합은 회원사에 실시권을 허여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조합 R&D역량 제고에 활용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과 '2011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8. 사업 문의 및 확인

■ 문의처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R&D 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중소기업중앙회)

기 관 명(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중앙회(공동사업팀)	02-2124-3103/4	사업설명회, 사업계획 작성, 현장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청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2	정책방향,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사업 총괄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www.smt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www.tipa.or.kr)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포탈 (<http://johap.kbiz.or.kr>)



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CO-DEVELOPMENT OF TECHNOLOGY BY COOPERATIVES)



I 지원개요

목적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혁신** 등을
협동조합이 발굴 개발 →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3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 **지원조건** : 과제 당 75%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25% 이상, 이중 현금 5%이상)
- **개발기간** : 1년 이하(자유과제)

II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종은 제외
- **참여기업 :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 시 참여기업(1개 이상) 반드시 포함**

신청자격 확인

〈서면 및 대면 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
→ 전문기관(기정원)에서 평가

〈현장평가 시〉 증빙서류 현장 확인 → 관리기관(중앙회)에서 평가

☞ 확인근거 :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조합원 명부, 기술개발 현황(실적, 보유인력 등)
조합원 참여 수요조사서, 네트워크 구축정보(대학, 연구소와 기술개발 등) 등

II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11. 5. 16(월) - 6. 15(수)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구비서류	제출방법	비고
사업계획서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경영현황표, 신용조회 동의서, 서약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다운로드 작성 후 문서 파일 업로드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천만원 이상)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해당시

Ⅲ 사업일정

서면평가 (6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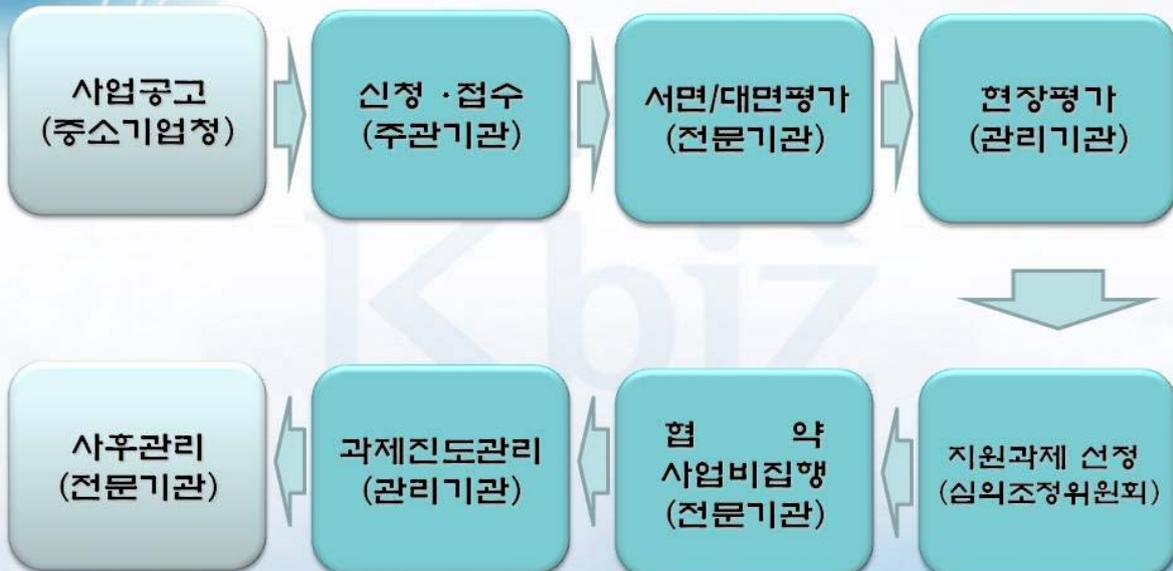
대면평가(6-7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평가

현장평가 (7월) 기술개발능력, 인프라 등 현장 방문 평가
- 주관기관, 참여기업 현장조사

선정 및 협약(8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후(민간부담금 납부) 지원금 지급

Ⅲ 사업일정

〈전체 흐름도〉



* (관리기관)중소기업중앙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V 기타

지원제외 사항

- 사업 참여자가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경우
- 사업 참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동일(유사)**한 경우
- 재무제표 등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휴면조합, 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 세금 체납** 중인 조합
- 참여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이상**(설립 2년 미만 예외)
- **자본전액 잠식**

IV 기타

금지 사항

- 기술개발 성공 시 **협동조합은 기술료 납부 면제**
- 기술개발 **결과물은 협동조합에 귀속**
-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 시 과제에 대한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보급 등 계획 수립
-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시권을 허여 할 경우 기술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기술료 사용 계획과 징수결과 보고**
- 사업참여 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IV 기타

문의처

관리기관(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03/4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

☎ 1661-1357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042-481-4442

인터넷 확인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중소기업중앙회 조합포탈

<<http://johap.kbiz.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IV 기타

<기관별 담당업무>

중소기업청

- ▶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 ▶ 출연금 지급 및 사업관리 총괄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 현장평가
- ▶ 진도점검, 최종점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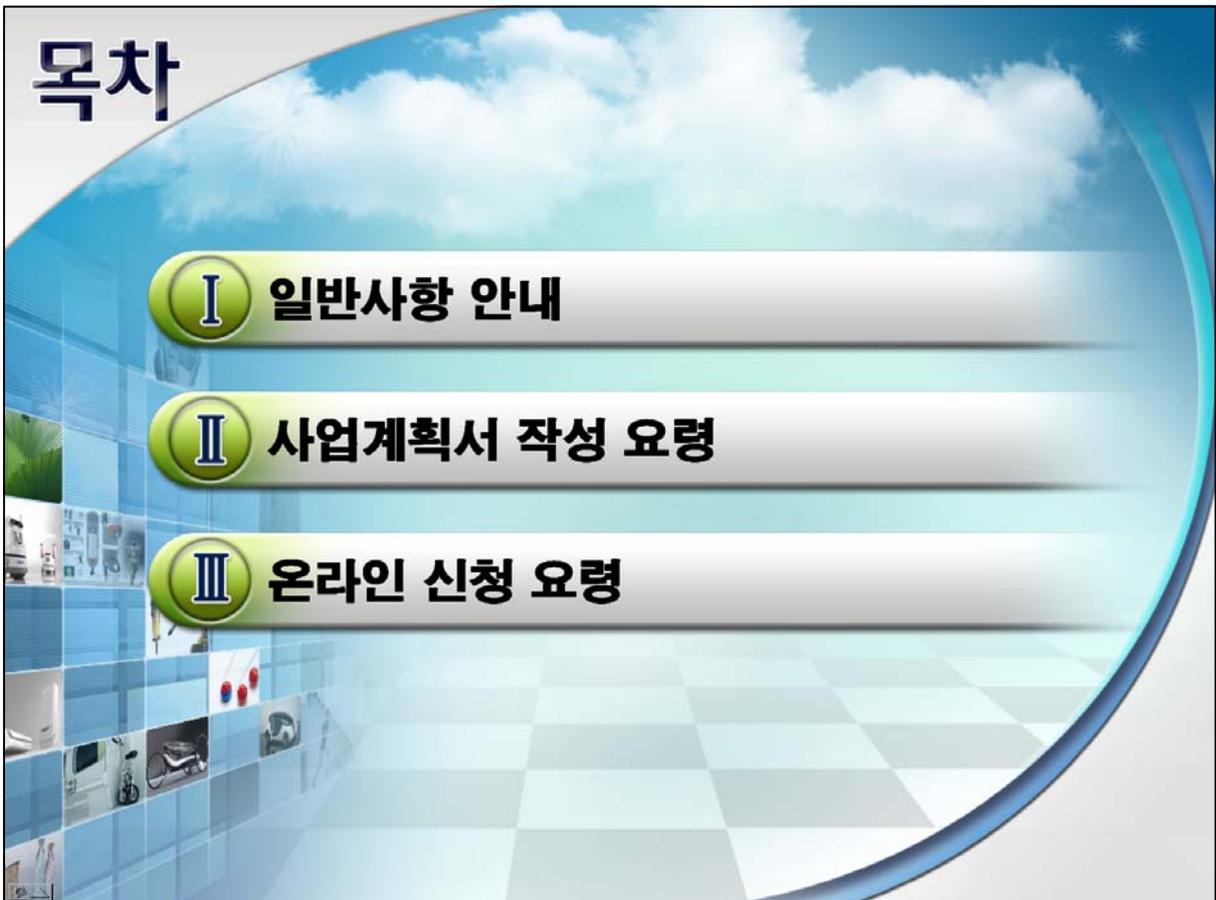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서면, 대면 평가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등

IV 기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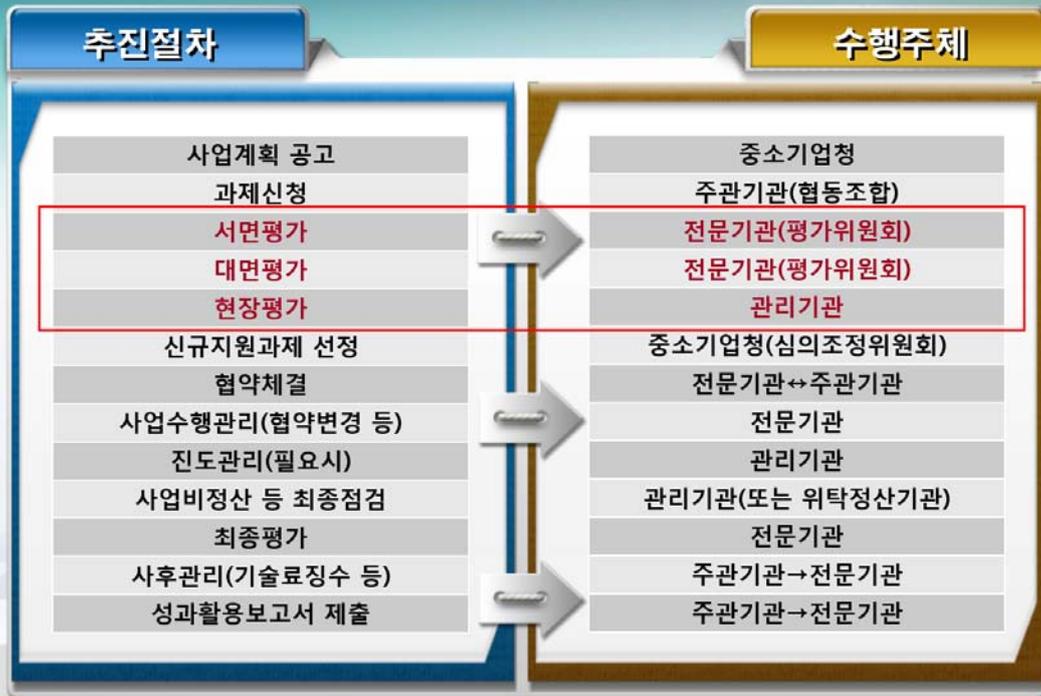




1. 추진체계



2. 추진절차



5/52

3. 선정 및 관리 절차(1)

신규 지원과제 선정 (3단계 평가)

- 1단계 : 서면평가(전문기관) : 전자평가 실시
 - ▶ 평가위원 평점 60점 이상과제 중 50%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
- 2단계 : 대면평가(전문기관) : 전자평가 실시
 - ▶ 평가위원 평점 60점 이상과제 중 2배수 내외에서 현장평가 추천
- 3단계 : 현장평가(관리기관)
 - ▶ 현장평가 점수 60점 이상과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참여기업 방문평가 필수
- 최종선정(심의조정위원회 : 중소기업청)
 - ▶ (대면평가점수 × 0.6 + 현장평가점수 × 0.4)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6/52

3. 선정 및 관리 절차(2)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전자협약 체결
- 기술개발비 포인트제 및 카드 사용

진도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진도보고서를 검토하여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
 - ▶ 관리기관은 기술개발 진척도, 사업비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여부 결정 (단, 6개월이하과제의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생략, 6개월 초과과제 의무 제출)
 - ▶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비 유용 등의 경우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실시간 모니터링**
 - ▶ 전자금융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검토하여 부도, 폐업 또는 사업비 집행이 과다 또는 불량 등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현장실태조사 실시

7/52

3. 선정 및 관리 절차(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최종 목표 달성 및 개발 과정,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등급 : 성공(종합평점 60점이상), 실패(종합평점 60점 미만 또는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미흡이하인 경우)
- 최종평가 실패시
 - ▶ 귀책사유에 따라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
- 사업종료이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시스템 설문제출)
-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실시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매출, 종업원 증가 등)의 실질 분석을 위한 현장추적조사 실시
 - ▶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를 5등급의 **성과등급**으로 분류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

8/52



II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 기술개발의 지원범위



2.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요 고려사항

- **기술지원수준 : 국내최고(세계최고) 수준 필요**
 - ▶ 수입대체, 외국제품 Reverse Engineering 가능
- **사전 준비성**
 - ▶ 기초실험결과, 시료(샘플) 확보 및 분석자료
 - ▶ 기술개발 관련 인력, 시설 등 **기본 Infra** 구축여부
- **목표 및 연구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 ▶ 기술개발내용 및 연구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 **정량적 평가항목** 설정여부 및 **객관적 시험평가**는 신규평가 및 최종평가시 주요 검토 항목
-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 작성**
 - ▶ 시장규모, 국내외 경쟁기술, 목표설정 등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
-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결**
 -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및 개발내용
 - ▶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
 - ▶ 최종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항목 및 객관적 측정방법** 구성
 -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및 추진체계**

11/52

3. 기술개발사업비 작성 원칙(1)

전체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 75%이하 + 민간부담금(민간현금 + 민간현물) 25%이상 = 100%**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5%이상
- **사업비 비목 구성**
 - ☞ 인건비 + 직접비 + 간접비 + 위탁연구개발비(해당시)

인건비

- **구성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기업소속 직원 및 대학·국립연구기관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 원칙**
 - ☞ 과제책임자 : 참여율 30%이상, 참여연구원 : 참여율 10%이상 참여 원칙

구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50%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서비스 등	총사업비의 100%이내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단,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12/52

3. 기술개발사업비 작성원칙(2)

직접비

- 구성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
 - 보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사용료는 장부가액의 20%이내 현물 산정
 - 주관기관 보유, 생산판매 중인 것은 원가로 현물 산정
 - ☞ 기술개발활동비 :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등
 - ☞ 연구수당 : 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신청원칙
 -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장비·재료비의 50%이내 (지식서비스, S/W, 설계기술 예외)
 - ☞ 연구활동비 : 총사업비의 10%이내(년도별 최대 2천만원이내)
 - ☞ 연구수당 : 비영리기관만 신청가능, 인건비의 20%이내

13/52

3. 기술개발사업비 작성원칙(3)

간접비

- 용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신청원칙
 - ☞ 연구실안전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인건비와 직접비의 17%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 ☞ 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 직접비는 현물제외

위탁연구개발비

- 구성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주관기관과 동일)
- 신청원칙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인건비와 직접비의 40% 이내

주요 Point

- 규정에 맞지 않은 사업비는 삭감 대상!!! (규정 속지)

14/52

4. 사업계획서 파일 작성

신청절차 개요 및 관련 서식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출력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연번	서 식 명	비 고	연번	서 식 명	비 고
①	조합공통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공 통	⑥	조합공통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②	조합(참여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공 통			
④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	공 통	⑧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⑤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⑨	기타 사업별 제출서식	사업별

4. 사업계획서 파일 작성

※ 아래 표는 전산시스템의 자동 생성 및 보완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지 마세요 (과제명 및 과제명만 작성 가능)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과제 번호	2) 과제 명	3) 기술 분류	4) 과제명	5) 과제 책임자	6) 과제 예산
7) 과제 목적	8) 과제 개요	9) 과제 예산	10) 과제 예산	11) 과제 예산	12) 과제 예산
13) 과제 예산	14) 과제 예산	15) 과제 예산	16) 과제 예산	17) 과제 예산	18) 과제 예산
19) 과제 예산	20) 과제 예산	21) 과제 예산	22) 과제 예산	23) 과제 예산	24) 과제 예산
25) 과제 예산	26) 과제 예산	27) 과제 예산	28) 과제 예산	29) 과제 예산	30) 과제 예산

중소기업청장 귀하

- 기술분류 : 안내 책자 기술분류 참조
 - ▶ 중요!! 산업기술분류는 평가위원회 분과 구성 기본자료
- 과제명 : 기술개발 내용을 함축적으로 명기
 - ▶ 중요!! 막연한 과제명은 금물
- 연차별 사업비 : 신청비율에 맞도록
 - 주의!! 사업계획서상의 내용 및 온라인 등록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결장은 Part I의 입력자료로 자동생성

Part I 전산입력 부분

1. 공고분류

사업분류	
공고	
재무공고	
저장공모(RFP) 등 (해당시)	
과 계 명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분류, 공고, 과제명 등 입력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기관명		총책임자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성신용(납품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	핸드폰	
	이메일	팩스	
과제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	핸드폰	
	이메일	팩스	
업무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	핸드폰	
	이메일	팩스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정보 입력

3. 개발기간

※ 공동 적용임시

구분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2차년도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3차년도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 기술개발 기간 명기

17/52

Part I 전산입력 부분

4. 기술개발 개요

4-1. 최종목표 요약

○
○

● 최종목표를 요약 기술

4-2.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기술

4-3. 키워드 (한글 5개, 영문 5개)

한글	①	②	③	④	⑤
영문	①	②	③	④	⑤

● 기술개발 내용의 핵심 키워드 명기

b. 보안등급 선정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

● 신청과제의 보안과제 여부 명기

▶ 주의!! 기술분류 제7호(국가핵심기술 목록)에 부합되어야 함

6. 기술분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제 핵심기술분류			
NTRM			(해당사항 없음)
특례 기술분류			
선성장분야 전략기술			

● 신청과제의 핵심기술이 포함되는 기술분류 선택
기술분류 제1호부터 제6호 참고

▶ 주의!! 기술분류에 따라 평가위원회 분과가 구성됨

18/52

Part I 전산입력 부분

7. 수행기관 정보 (해당시,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 수요처(구매조각부 신개체개발사업, 인공공통투자기술개발사업만 해당)

구분	수행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8.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성명	과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신규 채용 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 과제 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학위	전공	학위	취득년도				
주관기관				가나	전자	석사	2000	X	30%	-	40,000
	정윤영	-	-	-	공학	석사	-	0	50%	-	24,000

주관기관 이외의 추진체계상의 기관 정보 명기

주관기관 등 참여연구원 관련 내용 명기

신규채용 인력의 인적사항이 없을 경우 :
채용 예정으로 명기

신규채용 범위??? 접수마감일부터 기술개발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

9. 사업비 내역

9-1. 연차별 사업비 요약

(단위 : 천원)

구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민간(수요처)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0)	금액 75,000 % 95%	5,000	20,000	25,000			100,000 100%	
2차년도 (20)	금액 %						100%	
합계 (금액)	금액 75,000 % 75%	5,000	20,000	25,000			100,000 100%	

해당연차의 정부 및 민간부담금 명기

세부사업별 비율확인

Part I 전산입력 부분

9-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해당시에만 작성)

구분	연도	민간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주관기관	1차년도	5,000	20,000	25,000	25,000
	2차년도				
	3차년도				
	계	5,000	20,000	25,000	25,000(100%)

해당연차 및 수행기관의 민간부담 부담 내역 명기

9-3. 사업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현금)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차년도 (2011)	주관기관	9,000	15,000	50,000	5,000	1,000	20,000	80,000	20,000
	참여(해당시)								
	수요처(해당시)								
1차년 소계		9,000	15,000	50,000	5,000	1,000	20,000	80,000	20,000

연차별 비목 총괄 비용 명기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1. 과제 초록

1-1. 용어 및 약자 정의

용어 및 약자	정 의
① 예)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② 예) 신종플루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이다.

1-2. 핵심개발 내용

- 예) 본 기술개발은 신종플루 검사를 위한 Direct PCR 시약 개발로 기존의 검사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민감도를 기존의 2배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다.
-

1-3. 개발 결과물 및 판매(활용) 예상처

- 개발 결과물 : 예) 신종플루 검사용 PCR kit

판매(활용) 예상처	사용용도
① 예) 전국 거점병원	신종 플루 확진용 PCR kit
② 예) 대학	신종 플루 관련 연구 개발용

● 기술개발 관련 중요 약자나 용어 해설

● 기술개발내용 중 핵심내용 명기

● 기술개발 완료시 결과물과 판매처 명기

21/52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2. 개발기술의 개요

2-1. 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및 개발 필요성

2-1-1. 대상기술의 개요

- ※ 기술적 측면의 **기반성** 및 **핵심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 개념도' 또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2-1-2. 개발 필요성

-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2-2. 기술개발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2-2-1. 기술개발 효과

-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서술하고,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의 영항 등 산업적 효과 서술

2-2-2. 개발기술 활용방안

-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제안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반성 및 핵심성과, 경제 및 산업적 중요성에** 근간한 개발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서술

● 대상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개념도, 도면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하여 설명

●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 다른 기술로의 파급효과, 시장창출, 수입대체 등 기술 개발에 따른 예상 효과 명기

● 또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가능한 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22/52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3. 관련기술 현황

3-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기술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3-1-1. 국내 관련기술 현황

3-1-2. 국외 관련기술 현황

3-1-3. 신청과제 관련 기술개발 준비현황

※ 신청과제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위탁기관 포함)의 신청 과제 관련 기술개발 준비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하여 서술

3-2. 국내·외 시장 현황

3-2-1. 국내·외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10년)	예상 시장규모(2012년)
세계 시장규모	238,000	301,146
국내 시장규모	10,500	14,072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청 전략기술보고서(2007. 8)	

●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 주의!! 인용한 내용 등에 대한 근거 또는 출처를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 일부 부품이면서 전체 완제품 시장 명기 또는 대략적 추측으로 산출 금물

23/52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3-2-2. 국내·외 주요 주요시장 경쟁사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원)	연 판매액 (원)
① (주)우리회사	좋은제품	100	10,000,000
②			
③			

● 기술개발 결과물 관련 주요 경쟁사 및 판매액 등 명기

3-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존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명기

3-4. 기술개발 차별화 및 선행특허 회피 전략

※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또는 기존 지식재산권에 대한 회피 전략에 대해 명기
※ 기존 제품(기술) 대비 차별화가 가능한 핵심 기술에 대해 명기

●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존 선행 특허에 대한 회피 전략 등 차별화 방안,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등 명기

24/52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4.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4-1.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내용 (해당시, 광역기업 또는 위탁연구개발 내용 포함)

4-1-1. 최종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출물(제품, 기술 등)을 포함하여 함축해서 표현

최종 목표	○
-------	---

4-1-2. 기술개발 내용 및 업무분장 (해당시, 광역기업 또는 위탁연구개발 내용 포함)

□ 주요 기술개발 내용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을 위주로 작성하고, 세부적인 개발내용은 해당 년차에 열거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주관기관, 참여기업, 수주자 위탁연구기관, 최종용역자리 등별로 담당업무를 열거
 ※ 수주자(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수행기관	주요 담당 업무	기술개발 비중(%)
주관기관		
참여기업		
수주자		
위탁기관		
외주용역자리		
총 계		100%

• 위주용역자리만 주관기관이 추진체계는 없지만 유상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술개발비에만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를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 수행기관은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가감하여 작성할 것

- 최종목표는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 주의!! 필요성 위주로 길게 서술 금물
- 전체 기술개발내용 중 핵심기술 위주로 작성
 ▶ 주의!! 연차별 세부내용은 해당부분에 명기
- 주관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수행기관이 있을 때 기관별 담당 업무를 요약하고 기술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명기
- 주관기관 단독으로만 기술개발 수행시 삭제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4-1-3. 기술개발 목표 및 달성도 평가

※ 선정될까지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량화·수치화 하여야 하며 부실할 경우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개발개발 수요주, 최종 개발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지표의 명칭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

주요 성능지표 ¹⁾	단위	최종 개발목표 ²⁾	세계 최고수준 (K부록/보수기법)	가중치 ³⁾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 수 (≥3편입)	시험규격
1. 예) 속도	km	55km 이상	60km(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5.						
6.						
7.						

□ 시료수 5개 미만 (≥3개)시 사용

○

□ 측정결과와 측정방법 제시

○ 예)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한국 CXX연구원)의 시험정격서 제출 등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있을 경우 사유와 대책 방법을 열거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량화, 수치화, 명료화, 인정절차, 내용적성, 적용성, 용량성, 용량성, 용량성 등 기술적 성능관련 기술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우 제외하여 명시
 • 주2) 최종 개발목표는 '최종목표값 이상(min)' 또는 '최종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주3)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할당
 • 주4) 시료 수는 시험결과 검거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시 사유를 열거
 • 주5) 시험규격은 기술개발 공인인증시험 시험정격서(시험정격서 : KS, JIS)라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4-2 기술개발 선행연구 (해당시에만 작성)

※ 본 기술개발과 관련한 주관기관 등의 자체적 선행연구 결과, 특허(비특허)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일자를 열거

- 속도, 소음 등 정량적 작성 = 평가항목을 자세히!!
 ▶ 예시!! 모터 작동내구성 1만회 이상
- 성능을 측정할 시료가 5개 미만이거나 시료가 없을 시 해당 사유 명기
- 측정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제시자료 명기 (공인 시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신기술개발내용을 위해 선행연구, 특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명기

● 평가항목은 신규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목표 달성 판단 근거임
 ▶ 주요성능지표 및 증빙방법 등은 최종평가시 성공 실패의 주요 잣대
 ▶ 정량화, 수치화, 객관화가 필수로 비계량적이고, 주관적일 경우 감점의 요인
 ▶ 가중치는 각 항목의 합이 100%이어야 하며, 전체 100%로 볼 때 본 항목의 비율임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4-3 연차별 세부 개발내용 및 개발방법

4-3-1. 1차년도

□ 세부 개발내용

-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1차년도 세부 개발내용 및 범위를 명기

□ 세부 개발방법

- ※ 1차년도 세부 개발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논리적인 개발방법을 기술개발의 Time Schedule와 수행기관이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순차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 ※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 또는 시술하여 작성
- ※ 기 개발 및 선행 특허기술과의 차별화 및 특허 획득전략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 주관기관,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통틀로 담당업무를 명기
- ※ 수요처(구매조건부 판매개발사업만 해당)

수행기관	1차년도 주요 담당 업무	1차년도 기술개발 비중 (%)
주관기관	□ 자동차 엔진개발(예시)	50%
참여기업	□ 자동차 파워 개발(예시)	30%
수요처	□ 자동차 유리 개발(예시)	20%
위탁기관	□ 자동차 유리 개발(예시)	
외주용역처리		
총 계	□ 소형자동차 개발(예시)	100%

- 외부용역처리된 주관기관이 추진체계라는 있지만 특임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술개발비율이란 전체 기술개발비율을 100%를 기준으로 결정해 각 수행기관에서 맡은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 수입기관은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산가의 보충 가감하여 작성할 것

4-3-2. 2차년도 (단년도 사업인 경우 작성 불필요 → 전체 삭제)

□ 세부 개발내용

-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2차년도 세부 개발내용 및 범위를 명기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 계획을 명기
- ▶ 주의!! 연차별 내용은 논리적이고, 시계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이고 구체적으로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해당년도의 수행기관별 업무 명기

- 해당시만 작성하고, 단년도 사업의 경우 삭제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4-4. 세부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참여/ 수요처/ 위탁 등)	기술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년도	1. 예)계측수업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권금펌프 설치															
	4. 예)권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프로세스 명기

Part II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7-2.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 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판매처	국가 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00병원	한국	20	10,000	5	1,000,000	00치료제

7-3. 사업화 계획

※ 다음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사업화실적 평가기준이 됨에 따라 신중히 작성

구 분	사업화 년도		
	(2011)년 (개발완료 해당년)	(2012)년 (개발완료 후 1년)	(2013)년 (개발완료 후 2년)
사업화 제품	00치료제	00치료제	00치료제
투자계획(백만원)	100	100	100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200	200
	수 출	0	100
	계	200	300
수입대계표액(백만원)	100	200	300
고용 창출(명)	0	2	4

● 기술개발 결과물의 판매가 가능한 **판매처, 판매량, 총판매량** 등을 명기

● 기술개발 종료후 제품화, 양산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판매계획, 파급효과** 등을 명기

협동조합 경영현황표

[별지 제1-③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세부사업별 중요문 참조)

1-1. 주권기관

구 분	업종명	00000(주) 00년 결산기준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무채용계(백만원)		부채비율(%)
자본총계(백만원)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백만원)		(자본총계/자산총계)×100%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률(%)
R&D 투자액(백만원)		(영업이익/매출액)×100%
수출액(천원)		R&D 투자비율(%)
유동자산(백만원)		(R&D 투자액/매출액)×100%
유동부채(백만원)		수출비율(%)
계고자산(백만원)		(수출액/매출액)×100%
당기매출액(백만원)		단리비율(%)
전기매출액(백만원)		(유동부채/계고자산)×100%
INNO·H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영혁신형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특수인증기업 (특수기술인증기업, 특허전문기업)		(□ 해당, □ 해당없음)
코인비즈 인증기업		(□ 해당, □ 해당없음)
사업전통계획 승인기업		(□ 해당, □ 해당없음)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		(□ 해당, □ 해당없음)
정부과경영체계(MS) 인증기업		(□ 해당, □ 해당없음)
기업부실연구소 보유기업		(□ 해당, □ 해당없음)
역성기업		(□ 해당, □ 해당없음)
장해원기업		(□ 해당, □ 해당없음)

● 재무현황

- ▶ 재무제표를 근거로 정확히 명기
- 주의!! 평가시 **평가자료**로 활용됨
- ▶ 사실 유무는 **현장실태**조사시 확인되며, 허위사실이 있을시 지원제외될 수 있음

● 인증 등 기업현황

- ▶ 신청자격 또는 **가점**을 파악하는 자료
- ▶ 사실 유무는 **현장실태**조사시 확인되며, 허위사실이 있을시 지원제외될 수 있음



1.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항 목	확인여부
1. 주관기관 대표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2. 과제책임자, 실무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무 확인 (주관기관 대표자와 동일인인 경우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3. 참여업체에 대한 일반정보 숙지 (우대가점 정보, 사업자번호, 대표자 정보) 예) Inno-biz, 벤처, 여성기업 등, 참여 및 공동개발기업 정보 등	<input type="checkbox"/>
4. 주관기관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업체 대표자로 로그인 한 후, 업체 신규 등록 (중복된 사업자번호 존재 시 1661-1357로 문의하고 법인실명인증 절차는 반드시 홈페이지/제공되는 접수메뉴얼에 게재된 한신평 연락처를 통해 사전확인 및 등록!!)	<input type="checkbox"/>
5.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의 참여제한조치 사항 확인 (자체 확인 요망)	<input type="checkbox"/>
6. 대표자 계정으로서 업체 부가정보 내용 등록 및 정보 최신화	<input type="checkbox"/>
7. 각 책임자, 실무담당자, 대표자의 개인정보 최신화	<input type="checkbox"/>
8.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작성 준비 (홈페이지>>자료마당>>해당사업명>>지침>>별지서식확인)	<input type="checkbox"/>
9.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사업계획서 문서작성	<input type="checkbox"/>
10. 과제 중복성 자체검토 (smtech.go.kr, rndgate.ntis.go.kr)	<input type="checkbox"/>

III. 온라인 신청 요령(회원가입)

08. MEMBER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보다 폭넓은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저희 웹에서는 사용자가 온라인상 제공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회원님의 정보는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 아래의 사이트는 회원정보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2. 산업기술지원 (itech.keit.re.kr)
3. 중소기업기술지원 (www.smtech.go.kr)
4. 지역경제산업 통합정보서비스 (www.renet.go.kr)

☐ 정부과제수행자(대표자, 책임자 등)는 국가기술개발사업 지원정보로 개인정보가 계속 보관됩니다. 따라서, 과제참여 이력이 존재하는 회원은 탈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본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내국인 외국인

* 실명확인 서비스는 서울신문평가정보(주)의 도움을 받습니다.
* 실명확인 불가능하실 경우에는 SIREN24 고객센터(https://www.siren24.com/servlet/sci_realname1)로 문의 바랍니다.
* 2002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경우 법 제21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III. 온라인 신청 요령(양식 다운로드)

05. 자료마당

자료마당

사업규정자료

사업규정자료

발간자료

수행과제검색

시스템메뉴얼

사업규정자료

전체내용을 한번에 보길 원하시면 우측 "전체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자 료 구 분							
	통합규정	신청	협약	협약면경	보고서	기술료	참고	기타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기술개발사업	☐	☐	☐	☐	☐	☐	☐	☐
▶ 협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	☐	☐	☐	☐	☐	☐	☐	☐
▶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	☐	☐	☐	☐	☐	☐
▶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	☐	☐	☐	☐	☐	☐	☐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	☐	☐	☐	☐	☐	☐	☐
▶ 기술연구회설치지원사업(중요)	☐	☐	☐	☐	☐	☐	☐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	☐	☐	☐	☐	☐	☐
▶ 중소기업미집기술개발사업	☐	☐	☐	☐	☐	☐	☐	☐

통합규정과 사업계획서 양식을 download

III. 온라인 신청 요령(구성원 등 조회)

01. 과제관리
project administrator

- ▶ 온라인과제신청
 - 사건준비
 - 과제신청
 - 수요조사/ 과제제안서
- ▶ 전자평가
- ▶ 온라인협약
- ▶ 보고서제출
- ▶ 협약변경신청
- ▶ 과제진행현황
- ▶ 연구노트

온라인과제신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입니다.

HOME > 과제관리 > 온라인과제관리 > 사전준비

>> 사전준비

▶ **온라인 과제 신청 안내**

과제신청은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과제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은 대표자, 과제책임자, 실무책임자, 입력단계 마지막의 "과제권한자"로 등록된 자에 한 합니다. 접수 마지막단계(종료단계)에서 "과제권한자"의 항목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은 이후 과제에 대한 조회,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과제 접수 후 반드시 제출버튼을 클릭하시고 접수증을 출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 이전의 출력시간이 기재된 접수증을 미보유시 미접수에 대한 민청을 받지 않습니다.)
각 과제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시스템 사용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에 앞서 과제에 관련된 인원 및 기관들이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의 "구성원 조회", 기관 조회"버튼을 통해서 등록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접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에 사전 공고문 등을 확인해
- 기관 및 구성원의 장

- 참여제한에 따른 이력정보 조회방법 : ... 후 "마이페이지" >> "과제 조회내역" 에서 확인가능

구성원조회 및 기관조회로 관련자 사전등록 유무 확인



구성원 조회

등록권 필수 확인!!
신청권 필수 확인!!
사업수행을 위한 대표자, 책임자 등의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기관조회

등록권 필수 확인!!
신청권 필수 확인!!
사업수행을 위한 대표자, 책임자 등의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III. 온라인 신청 요령(과제목록)

01. 과제관리
project administrator

- ▶ 온라인과제신청
 - 사건준비
 - 과제신청
 - 수요조사/ 과제제안서
- ▶ 전자평가
- ▶ 온라인협약
- ▶ 보고서제출
- ▶ 협약변경신청
- ▶ 과제진행현황
- ▶ 연구노트

온라인과제신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입니다.

HOME > 과제관리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최종수정 및 최종 수정자 항목의 의미

※ 과제신청기간 : 신청과제의 접수기간 내에는 신청기관의 과제신청 입력시간 및 입력자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 과제신청 종료 후 : 평가, 협약, 과제관리 등 전문 및 관리기관담당자의 관련정보 입력 및 수정시간,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과제번호	사업분류	과제명	차수	최종수정	최종수정자	수정단계	제출일시	인쇄
S1079324	구명조경부식 제품개발사업	test	0	2010-10-25 18:24:06	최새봄	접수단계 (1단계)		사업계획서
S1078512	구명조경부식 제품개발사업	test	1	2010-05-15 01:06:59	최새봄	접수단계 (제출완료)	2010-05-15	접수문 사업계획서
S1075973	구명조경부식 제품개발사업	과제신청 테스트	1	2010-04-21 19:58:34	최새봄			사업계획서
S1071343	협단공법 활용 기술개발사업	테스트	2	2010-04-14 10:23:08	김중운			사업계획서
S1071034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테스트	1	2010-09-31 22:31:56	최새봄	접수단계 (3단계)		사업계획서

신규신청 클릭

[신규신청](#)

III. 온라인 신청 요령(접수시 사전체크사항)

과제신청전 확인사항 입력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사전체크 리스트

확인항목 **주의 !! 모든 확인항목에 체크되어야 과제접수 화면으로 이동**

1. 주관기관 대표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2. 과제책임자, 실무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3. 참여업체에 대한 일반정보를 숙지했습니다. (우대가점 정보, 사업자번호, 대표자 정보)
4. 주관기관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업체 대표자로 로그인 한 후 업체 정보 등록을 수행하였습니다. (중복된 사업자번호 존재 시 1661-1367로 문의하고 법인실명인증 절차는 반드시 홈페이지/제공되는 접수매뉴얼에 기재된 한신평 연락처를 통해 사전확인 및 등록!!)
5.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의 참여제한조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체 확인 요함)
6. 대표자 계정으로서 업체 부가정보 내용 등록 및 정보 최신화를 수행하였습니다.
7. 각 책임자, 실무담당자, 대표자의 개인정보 최신화를 수행하였습니다.
8.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작성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홈페이지>>자료마당>>해당사업명>>지침>>별지서식확인)
9.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사업계획서 문서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10. 과제 중복성 자체검토 (smtech.go.kr, rndgate.ntis.go.kr)를 수행하였습니다.
11. 과제 접수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A) INNODS 파일압축해제 프로그램 설치 및 다운로드 받기
 - B) REPERIT 레퍼토 뷰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기
 - C) JYSOFT 파일 컨트롤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기

상기 1번부터 11번까지의 모든 사항을 과제신청자가 책임지고 확인하였으며 확인 정보를 시스템상에 저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항으로 인한 접수불가 사유가 발생 한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약관서명하기

Keit | COPYRIGHT © SMBA ALL RIGHTS RESERVED.

III. 온라인 신청 요령(전산입력 1단계)

온라인과제신청

1단계 : 공고 및 기술분류

과제번호 : S1069734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기관명	한국산업기술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eit.re.kr
설립년월일	2009-05-04	상시종업원수(명)	200 (명)
사업자등록번호	Z209206390	법인등록번호	1146710037170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3. 개발기간

개발기간	2010-02-01	2012-01-31	24 (개월)
------	------------	------------	---------

1단계 : 공고 및 기술분류

1. 공고분류

사업분류	구비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고	2010년도 구비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세부공고	수요조사과제
수요조사명	무임서보식 인덕시제어용 변압기 국산화 개발
과제명	구비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조사과제 테스트 - 과제번호 20100201
신청기업대부	신성기업
주관기업소재지	서울

2단계 : 공고 및 기술분류 선택, 주요 수행자 정보 선택, 개발기간 등

III. 온라인 신청 요령(전산입력 2단계)

8. 참여연구원 ▶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은 해당 연차별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하실 인건비 소요명세내역과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력시 참여제한이 있는 연구원은 배제됩니다.
 ※ 신규채용예정연구원의 경우 연봉정보 정도만 입력하되, 향후 과제간행시 규정 및 지침에 정한기간내에 채용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별로 등록

상태	<input type="checkbox"/> 삭제	차수	소속기관	성명	전공	학위	1차를 선택 연차별 과제별 (%)	연봉 (천단위)	담당분야	연구참여부
<input type="checkbox"/>		1차	교육과정평가원	김명갑	자원경제학	문(초급)대 지	50	20,000,000	Lo ee	Y
<input type="checkbox"/>		2차	교육과정평가원	김명갑	자원경제학	문(초급)대 지	50	20,000,000	Lo ee	Y

[2 / 2] ▶ 저장 ▶ 추가하기

※ 본 과제를 통해 신규채용이 예정된 연구원의 참여율 및 연봉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상태	<input type="checkbox"/> 삭제	차수	소속기관	참여율(%)	연봉(천단위)	분야
<input type="checkbox"/>		2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3	2,323,422	123 x c e

III. 온라인 신청 요령(전산입력 2단계)

9. 사업비정보 ▶ 작성요령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을 규정비율에 맞게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원금 = 과제의 현금부담, 민간부담원금 = 과제의 현금 부담입니다.

9-1. 연차별 사업비 요약 (단위: 천원)

차수	정부출연금(천원)			민간부담금(천원)			소계
	원금	비율	원금	비율	원금		
1	100,000	71.4	30,000	21.4	10,000	7.1	140,000
2	200,000	74.1	60,000	22.2	10,000	3.7	270,000
합계	300,000	145.5	90,000	43.6	20,000	10.8	410,000

[2 / 2] ▶ 저장

※ 과제별 참여기관(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민간부담금에 대한 분할부담 상세내역입니다.

9-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단위: 천원)

차수	구분	업체명	원금(천원)	비율(%)	계
1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	20,000	10,000	30,000
1	참여기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00	0	10,000
소계 : 1			30,000	10,000	60,000
2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	50,000	10,000	60,000
2	참여기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00	0	10,000
소계 : 2			60,000	10,000	110,000
합계			90,000	20,000	110,000

[4 / 4] ▶ 저장

9-3. 사업비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차수	구분	기관	비목	원금(천원)	현금(천원)
1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	인건비	50,000	10,000
1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	직접비	40,000	0
1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	간접비	40,000	0
1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	위탁연구개발비	130,000	10,000
소계 : 1				130,000	10,000
합계				130,000	10,000

[4 / 4] ▶ 저장 ▶ 이전단계 ▶ 다음단계

- 사업비부담내역(정부,민간), 민간부담금 분할내역(민간,수요처), 비목별 총괄입력
- 참여기업, 수요처의 비목은 주관기관의 비목으로 합산하여 입력

III. 온라인 신청 요령(전산입력 3단계)

과제번호 : S1069734

추가하기

과제권한자

상태	이름	소속	직위	부서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권재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관리	정보화팀	010-6349-7573
<input type="checkbox"/>	이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기획운영팀		010-8963-2053

과제조회동의여부

과제조회동의여부는 국가과학기술정책관리시스템(NTIS) 및 중산과제관리시스템 등 에서 과제등록성 결 도 등을 위한 과제개요 동의 및의뢰에 대한 동의여부를 여는 항목입니다.

동 내용은 동의여부에 따라 별도의 조회방식이 정해지긴 않으며, 신청시 의사표현으로서 단순참고용으로 활용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Part I: 시스템 직접입력 내용 출력부분 (신청일자 중 2단계, 별도작성 첨부서 접수가 불인정 할 수 있)

1) 과제 번호	S1069734	2) 공고 번호	2010-6	3) 기술 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광학영상기계 소분류: 하드디스크기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기계·소재 D01.차량리학 D010.광학학	OT
----------	----------	----------	--------	----------	--	----------------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4) 과제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 조사과제 테스트 - 최종물 20100201

5)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best.r

6) 과제책임자: 이영호 (생년월일: 1980년 08월 15일)
권재홍 (생년월일: 1960년 08월 15일)

7) 개발기간: 2010.02.01 ~ 2012.01.31 (24개월)

- 과제권한자 입력, 추가, 수정 (전산상 과제정보 관리권한자), 과제조회동의 여부 선택
- 전산입력사항 (Part I.) 자동출력, "자동저장하기" 혹은 저장버튼을 통해 pdf로 저장

III. 온라인 신청 요령(전산입력 3단계)

각 사업별 지침의 별지서식(사업계획서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작성된 문서파일을 업로드 하는 항목입니다.

【참고문】

- 사업신청서식 (Part. I)은 상단의 전산입력사항 출력물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신 뒤, 매개의 "파일업로드" 버튼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시는 것은 불인정이며 (Part.I) 은 오로지 전산입력내용으로만 신규 신청방식을 진행합니다. (Part.I) 부분을 별도로 작성, 업로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 한글문서파일 (*.hwp), 오로소 워드문서파일 (*.doc, *.docx), PDF변환결과파일 혹은 스프레드시트 (*.pdf)

※ 모든 파일은 문서양호를 위해 하자양호시 한후 PDF 문서 변환해 업로드 할 것 양호를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서내용의 하이라이트, 세로쓰기 등을 실시할 경우에도 문서변환에 되지 않습니다.

문서변환여부? : 과제관련 서식(신청, 보고제) 첨부파일 업로드 및 변환

문서유형	첨부파일명	변환 상태	변환 사용일	수정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서 (Part.I, 중간입력 출력물)	[참고] 조산소스업로드용 기본 계획서.pdf	성공	완료	2010-02-01 11:43:30
위탁기관 참여사확인서	[붙임1] 2010년도 산학연 사업-공고문.hwp	성공	완료	2010-02-01 11:43:30
각계권한자 참여서 및 계약조건부 신청서	[붙임1] 2010년도 산학연 사업-공고문1.hwp	성공	완료	2010-02-01 11:43:30
사업별 별도문서식(첨부파일)	[붙임2] 2010년도 사업별 별도문서식-첨부파일.hwp	성공	완료	2010-02-01 11:43:3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서 (Part.I, 업로드)	[붙임3] 2010년도 사업별 별도문서식-첨부파일.hwp	성공	완료	2010-02-01 11:43:30
중소기업 경영현황	[붙임4] 2010년도 사업별 별도문서식-첨부파일.hwp	성공	완료	2010-02-01 11:43:30
사업별 비특성 수요명세	[붙임5] 2010년도 사업별 별도문서식-첨부파일.hwp	성공	완료	2010-02-01 11:43:30
신청상태 조회 통의식	[붙임6] 2010년도 사업별 별도문서식-첨부파일.hwp	성공	완료	2010-02-01 11:43:30

추가하기

파일업로드

중소기업청

문서명	파일명(용량)	파일찾아보기	파일삭제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서 (Part.I, 전산입력출력물)	(용량)	찾아보기...	삭제
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서 (Part.II, 업로드)	(용량)	찾아보기...	삭제
3. 사업별 비특성 수요명세	(용량)	찾아보기...	삭제
4. 중소기업 경영현황	(용량)	찾아보기...	삭제
5. 신청상태 조회 통의식	(용량)	찾아보기...	삭제
6.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경영 서식서	(용량)	찾아보기...	삭제
7.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용량)	찾아보기...	삭제
8. 특허선별조사용 위한 기술요역서 (해당시)		찾아보기...	삭제
9. 위촉기관(계약기관) 참여의사확인서 (해당시)		찾아보기...	삭제

전송하기

Copyright © BMA All Rights Reserved

- 다음단계에서 "제출하기"하면 자동 pdf변환
- 변환처리는 제출과 무관, 접속량에 따라 시간소요
- 파일업로드 :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전체 50Mbyte이하
- 1. 사업계획서 Part.I은 반드시 전산제공출력물(pdf)

III. 온라인 신청 요령(업로드 및 제출하기)

S106974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조용파를 미용한 해수건해설비 세정 신기술 개발	1	2010-02-01 14:28:53	최재복	접수단계 (종료단계)	제출하기 사업계획서
S106974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soo_test	3	2010-02-01 17:43:44	최재복	접수단계 (제출완료)	수정하기 접수종료 사업계획서

Receipt Preview - Windows Internet Explorer

접수증

□ 과제정보

신청사업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명	2010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과제번호	S1069742		
제부종교명	수요조사과제		
수요과제명(RFP명)	한국형 초저상 시뮬버스를 황체어 램프 개발		
신청과제명	soo_test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출발책임자	최스르		
출개발기간	2008-02-01 ~ 2010-02-27 (총 25 개발)		

□ 참여(공동) 및 위탁기관

구분	기관명
참여기업	(주)스타텍스

□ 연차별 신청금액 (단위:천원)

차수	장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계
		현금	현물	
1차	4,000	0	0	4,000
2차	0	0	0	0
3차	0	0	0	0
4차	0	0	0	0
5차	0	0	0	0
6차	0	0	0	0
7차	0	0	0	0
8차	0	0	0	0
9차	0	0	0	0
10차	0	0	0	0
11차	0	0	0	0
12차	0	0	0	0
13차	0	0	0	0
14차	0	0	0	0
15차	0	0	0	0
16차	0	0	0	0
17차	0	0	0	0
18차	0	0	0	0
19차	0	0	0	0
20차	0	0	0	0
21차	0	0	0	0
22차	0	0	0	0
23차	0	0	0	0
24차	0	0	0	0
25차	0	0	0	0

▶ 주의!! 제출하기를 눌러야 제출완료로 처리됨

- "제출하기"하면 업로드한 문서 pdf변환 시작
- 변환처리는 제출과 무관, 업무량에 따라 소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II 사업신청 관련서식

1. [별지 제1호] 사업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사업별 제출 여부)	Page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공 통	43
②	중소기업경영현황표	"	78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79
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88
⑤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89
⑥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90
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91
⑧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92

※ 한글파일작성 후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 (①의 경우 일부 입력사항은 전산 자동출력/첨부)

[별지 제1-①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공통):

□ 신청절차 개요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 개요, 사업비 등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내용, 결과 활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과 ②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과 ②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신청 과제별로 요구하는 별첨자료([별지 제1-③~⑨호])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별지 제1호] 중, 사업신청 관련 서식 내역

연번	서식 명	비 고(사업별 제출 여부)	Page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계획서	공 통	43
②	중소기업경영현황표	"	78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79
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88
⑤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89
⑥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90
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91
⑧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92

※ [별지 제1-①과 ②]는 전산입력·첨부, [제1-③ ~ ⑨호]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 아래 표지는 전산접수시 자동 생성 및 포함되므로 따로 작성하지 말 것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필요)

1) 과제 번호	2) 공고 번호	3) 기술 분류	비고		산업 기술분류	과학기술 표준분류	6T	NTRM	녹색기술 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명)					자유응모 <input type="radio"/> 지정공모 <input type="radio"/> 투자연계 <input type="radio"/> 공개여부 가 <input type="radio"/> 부 <input type="radio"/>													
4) 과제명																		
5) 주관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생산품								
6) 과제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직위		휴대전화						
팩스		전화																
7)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 20 . . . ~ 20 . . . (개월)																		
8)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민간(수요처/이전기관) 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9) 참여기업1																		
										기업명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생산품목								
대표자/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9) 참여기업2 (해당시)																		
										기업명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생산품목								
대표자/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구분	기업(관)명	대표자	부서/학과	책임자	전화
10) 수요처					
11) 위탁연구기관					
12)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휴대전화	e-mail
13) 보안등급	보안과제(), 일반과제()				
<p>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과제책임자 :</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기관 대표자 :</p> <p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청장 귀하</p>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의 현황을 명기

Part I : 시스템 직접 입력 (신청절차 中 2단계)

1. 공고분류

사업분류	
공 고	
세부공고	
지정공모(RFP) 명 (해당시)	
과 제 명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류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분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 ○ 공 고 : 선택한 사업분류와 관련된 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세부공고 :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 공고의 세부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지정공모(RFP) 명(해당시) :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만 작성하되, RFP를 검색 및 선택하여 입력 ○ 과 제 명 : 수행할 과제의 기술개발 과제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력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기 관 명		홈 페이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납품처)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과제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실무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작성요령

- “Part I : 시스템 직접입력 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 주관기관
기업명, 대표자 및 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입력
 - 회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 ① 대표자, 책임자, 실무담당자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 ② 기관등록의 경우 대표자로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업정보 등록
 - 기관의 대표자로 접속하여도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
 - 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를 등록
 - ② 등록하려는 사업자번호가 중복이라 표시될 경우 : 전산접수 문의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 ③ 등록하려는 사업자명이 법인실명인증이 실패할 경우 : 전산 경고창을 참조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한국신용평가정보)
 - 조회되는 연락처 등의 정보가 틀린 경우
 - ① 해당 회원이 직접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수정
- ※ 주관기관 등의 주소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됨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 주소를 반드시 명기할 것

3. 개발기간

※ 공통 적용양식

구 분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2차년도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3차년도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작성요령

- 해당 연차별 개발기간을 입력

4. 기술개발 개요

4-1. 최종목표 요약

-
-

4-2.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3. 키워드 (한글 5개, 영문 5개)

한 글	①	②	③	④	⑤
영 문	①	②	③	④	⑤

작성요령

- 최종목표 및 연차별 개발목표 요약 : 4,000Byte(한글 2,000자) 내로 요약하여 전산입력
- 키워드 : 한글, 영문을 구분하여 전산으로 입력하되 각각 3항목 이상 입력

5. 보안등급 신청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등급 분류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 ○ 보안과제로 신청한 경우 대면평가시 보안등급 여부를 판단하며,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기술개발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가 부여됨

6. 기술분류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			
NTRM			(해당사항 없음)
녹색기술분류			
신성장분야 전략기술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 국가기술지도분류(NTRM), 녹색기술, 신성장분야 전략기술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의 “기술분류표”를 참조하여 본 과제의 해당분류를 선택하여 입력 ※ 기술분류 입력은 향후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신청과제의 핵심개발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각 기술분류의 세부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 수행기관 정보 (해당시,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의 정보를 작성

구 분	수행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참 여 기 업			
위탁연구기관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의 입력방법에 준하여 참여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 각 수행기관은 검색 전에 반드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방법은 2.항 작성요령 참조)

8. 참여연구원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의 정보를 작성

소속 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신규 채용 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학교	전공	학위	취득년도				
주관기관				가나	전자	석사	2000	X	30%	-	40,000
	채용예정	-	-	-	공학	석사	-	o	50%	-	24,000
참여기업 (해당시)											
외부참여 연구원 (해당시)											
위탁 연구기관 (해당시)											

작성요령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참여연구원의 본 과제 참여율은 반드시 10% 이상, 과제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 주관기관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접수마감일로부터 기술개발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 주관기관 등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직계존비속참여연구원등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임으로 실제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시 해당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합니다.

9. 사업비 내역

9-1. 연차별 사업비 요약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민간(수요처)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금액							
	%							100%
2차년도 (20)	금액							
	%							100%
3차년도 (20)	금액							
	%							100%
합 계 (금액)	금액							
	%							100%

작성요령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정부출연금 및 민간(기업)부담금 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민간부담금 현금은 민간(기업)부담금의 20%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이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75%, 민간부담금이 25%로 가정할 경우
 - 총사업비 200백만원 = 정부출연금 (150백만원이하, 75%이하) + 민간(기업)부담금 (50백만원이상, 25%이상)
 - 민간부담금 (50백만원이상) = 민간부담현금 (10백만원이상, 20%이상) + 민간부담현물 (40백만원이상, 80%이하)
-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함. 기술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할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9-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해당시에만 작성)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의 현황을 명기

구 분	연도	민간 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주관기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
참여기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
합 계					(100%)

9-3. 사업비 비목별 총괄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 현황을 명기

(단위 : 천원)

구 분		인 건 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합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차년도 (20)	주관기관								
	참 여(해당시)								
	수요처(해당시)								
1차년 소계									
2차년도 (20)	주관기관								
	참 여(해당시)								
	수요처(해당시)								
2차년 소계									
3차년도 (20)	주관기관								
	참 여(해당시)								
	수요처(해당시)								
3차년 소계									
합 계									

작성요령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 연구개발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아래의 세부사용처를 명기
- 또한, 비고란은 사용주체를 명기(주관기관 등)
-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산정시, 공통 적용사항 요약 >

구 분	산정 또는 비율제한			
인건비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50%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 서비스 등	총사업비의 100%이내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단,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직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장비·재료비의 50%이내(지식서비스, S/W, 설계기술 제외) 연구활동비 : 총사업비의 10%이내 (연도별 최대 2천만원 이내)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기관(기업)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업신용평가비, 기술자료임치비 등)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 가능) 비영리기관 : 간접비는 아래의 <간접비 사용용도>내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40%이내 			

< 사업비 산정시, 세부사업별 특례사항 요약 >

구 분	산정 또는 비율제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협력단 활용비용을 기술정보활동비에 반영하는 경우 연구활동비를 총사업비의 10%(최대 3000만원)이내까지 계상 가능 국방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지원비를 위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연 2000만원이내에 계상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협력단 활용비용을 기술정보활동비에 반영하는 경우 연구활동비를 총사업비의 10%(최대 3000만원)이내까지 계상 가능 국방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지원비를 위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연 2000만원이내에 계상

1. 인건비

-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합계)의 50%이내에서 책정하며, 기업소속 직원 및 대학·국공립연구기관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인력의 경우,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계상 가능
- (지식서비스 등) 기술개발의 주된 내용의 대부분이 지식서비스 분야 또는 소분류가 S/W 및 설계 기술 등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을 계상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합계)의 100%까지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이 없을 경우는 총사업비(합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 중 현금 산정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50%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 서비스 등	총사업비의 100%이내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단,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 예 시 >

구 분	총사업비	인건비 총액	인력구분	인건비 현금	인건비 현물
일반 제조업 등	1억원	5천만원 까지	기존	계상불가	계상가능
				현금계상시 삭감	
			신규	계상가능	계상가능
				참여율 100%가능, 인건비 현금 전액 계상 가능 * 예)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 100%이고 연봉이 2천만원인 경우 : 현금 2천만원까지 가능	
지식 서비스 등	1억원	1억원까지	기존 (5천만원까지)	계상가능	계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 10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현물은 1천만원이상, 현금은 1천만원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 현물 1천만원, 현금 1천만원(O) - 현물 9백만원, 현금 1천1백만원(X, 현금 2백만원 삭감대상) - 현물 1천1백만원, 현금 9백만원(O)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5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인건비는 1천만원이고(2천*0.5) - 현물은 5백만원이상, 현금은 5백만원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계상가능	계상가능

2. 직접비

※ 과제선정평가지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수행기관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 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의 50% 이내(지식서비스, S/W, 설계기술 예외)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산정한다.

다) 시약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약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가)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의 10%이내(연도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출장여비

-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위탁정산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3. 간접비

-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단,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③ 연구개발능력성급 :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급

2. 연구지원비

-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과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③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2. 개발기술의 개요

2-1. 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및 개발 필요성

2-1-1. 대상기술의 개요

※ 기술적 측면의 기반성 및 핵심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 개념도', 또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

2-1-2. 개발 필요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

○

-

-

2-2. 기술개발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2-2-1. 기술개발 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서술하고,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

-

2-2-2. 개발기술 활용방안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

-

○

-

-

3. 관련기술 현황

3-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3-1-1. 국내 관련기술 현황

○

-

-

3-1-2. 국외 관련기술 현황

○

-

-

3-1-3. 신청과제 관련 기술개발 준비현황

※ 신청과제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위탁기관 포함)의 신청 과제 관련 기술개발 준비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하여 서술

○

-

-

○

-

-

3-2. 국내·외 시장 현황

3-2-1. 국내·외 시장 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청 전략기술보고서(2007. 8)	

3-2-2. 국내·외 주요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공정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해당시)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①			
②			
③			

3-2-3. 국내·외 주요 주요시장 잠재수요자

※ 본 기술/제품/공정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해당시)

잠재수요자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①			
②			
③			

3-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명기할 것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3-4. 기술개발 차별화 및 선행특허 회피 전략

※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또는 기존 지식재산권에 대한 회피 전략에 대해 명기

※ 기존 제품(기술) 대비 차별화가 가능한 핵심 기술에 대해 명기

○

-

-

○

-

-

4.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4-1.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내용 (해당시,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개발 내용 포함)

4-1-1. 최종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을 포함하여 함축해서 표현

최종 목표	○
-------	---

4-1-2. 기술개발 내용 및 업무분장 (해당시,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개발 내용 포함)

주요 기술개발 내용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작성하고, 세부적인 개발내용은 해당 년차에 명기

○

-

-

○

-

-

○

-

-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 주관기관,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등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 현황을 명기. 참여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기업명)으로 표기

수행기관	주요 담당 업무	기술개발 비중(%)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외주용역처리		
총 계		100%

- * 외주용역처리란 주관기관이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목업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 기술개발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를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 * 수행기관은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가감하여 작성할 것

4-1-3. 기술개발 목표 및 달성도 평가

- ※ 선정평가지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량화·수치화 하여야 하며 부실할 경우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 기술개발 종료후, 최종 개발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시료의 평균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

주요 성능지표 ¹⁾	단 위	최종 개발목표 ²⁾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가중치 ³⁾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 수 (n≥5개)	시험규격
1. 예) 속도	km	55km 이상	60km(3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5.						
6.						
7.						
<input type="checkbox"/> 시료수 5개 미만 (n<5개)시 사유 ○						
<input type="checkbox"/>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 예)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한국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제출 등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기						

-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 *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 주3)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 주3)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시 사유를 명기
- * 주4)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4-2 기술개발 선행연구 (해당시에만 작성)

※ 동 기술개발과 관련한 주관기관 등의 자체적 선행연구 결과, 특허명(내용요약)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명기

○

-

-

○

-

-

4-3 세부 개발내용 및 개발방법

세부 개발내용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1차년도 세부 개발내용 및 범위를 명기

○

-

-

○

-

-

세부 개발방법

※ 1차년도 세부 개발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논리적인 개발방법을 기술개발의 Time Schedule과 수행기관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순차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 또는 서술하여 작성

※ 기 개발 및 선행 특허기술과의 차별화 및 특허 회피전략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

-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주관기관,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등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 현황을 명기. 참여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기업명)으로 표기

수행기관	1차년도 주요 담당 업무	1차년도 기술개발 비중(%)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엔진개발(예시) - - 	40%
참여기업1 (A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바퀴 개발(예시) - - 	20%
참여기업2 (B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후진 개발(예시) - - 	20%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유리 개발(예시) - - 	20%
외주용역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총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자동차 개발(예시) - - 	100%

* 외주용역처리란 주관기관이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목업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술개발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를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 수행기관은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가감하여 작성할 것

4.4. 세부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참여/ 수요처/ 위탁 등)	기술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년도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작성요령
<p>○ 연차별 세부개발내용의 기술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p>※ 평가시 주요사항으로 해당 목표에 대한 적정 개발기간 검토 및 실제적인 기술개발 주체(주관 기관,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또는 용역 등)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p>

5. 핵심 연구인력 주요 이력 및 연구수행 실적

5-1. 주요 이력

5-1-1.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최종학위 논문명)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5-1-2. 주관기관 핵심개발자* (과제책임자와 핵심개발자 동일시 작성 불요 → 삭제)

※ 핵심개발자란 신청과제 개발내용에 대한 주요 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한 주관기관 소속의 실무연구원으로서 2인 이내에서 작성

성명			생년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최종학위 논문명)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5-1-2.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해당시에만 작성)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 현황을 명기. 참여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기업 (기업명)으로 표기

참여기업1(A사) ('A사'에는 해당 기업명 명기)

성명			생년월일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			
(최종학위 논문명)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연구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하며 최종 학위논문명 명기 ◦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력을 순차적으로 명기하며, 수상경력 및 특허 출원·등록이 있을 경우 명기
------	--

참여기업2(B사) (해당시에만 작성, 'B사'에는 해당 기업명 명기, 불요시 → 삭제)

성명			생년월일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			
(최종학위 논문명)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5-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상용화 실적

5-2-1. 주관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2						
3						

5-2-2. 참여기업(해당시에만 작성)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 현황을 명기. 참여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기업명)으로 표기

참여기업1(A사) ('A사'에는 해당 기업명 명기)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2						
3						

작성요령

- 주관기관 등에서 정부출연 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기입

참여기업2(B사) (해당시에만 작성, 'B사'에는 해당 기업명 명기, 불요시 → 삭제)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2						
3						

5-3. 기 개발 또는 판매 중인 제품 (개발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

5-3-1. 주관기관

번호	제 품 명	연간매출액	주요 성능 (또는 기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3			

5-3-2. 참여기업 (해당시에만 작성)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 현황을 명기. 참여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기업 (기업명)으로 표기

참여기업1(A사) ('A사'에는 해당 기업명 명기)

번호	제 품 명	연간매출액	주관/참여/ 수요처 등	주요 성능 (또는 기능)
1				◦ ◦ ◦
2				
3				

작성요령
◦ 주관기관 등에서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제품과 Spec.을 명기하고, 해당 제품의 연간 매출액을 명기 (개발 중일 경우는 개발 중으로 명기)

참여기업2(B사) (해당시에만 작성, 'B사'에는 해당 기업명 명기, 불요시 → 삭제)

번호	제 품 명	연간매출액	주관/참여/ 수요처 등	주요 성능 (또는 기능)
1				◦ ◦ ◦
2				
3				

6. 연구기자재 설비보유 및 구입현황

구분	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연도	용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기보유 기자재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주)우리회사 (주관기관)	
						자기개발(주) (참여기업)	
신규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	임차						
	구입						

작성요령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은 보유 기관(기업)명을 명기하고, 그 기관의 과제 참여 형태(주관기관,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등)를 병기
- '활용도 및 시기'는 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상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구입은 선정평가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7. 결과활용 및 사업화방안

7-1.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7-1-1. 주요 핵심 기술 및 차별화 전략

※ 기술의 보호 및 제품개발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명기

-
-
-

7-1-2. 제품개발 및 신뢰성 (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제품개발 계획

※ 기술개발 결과 특성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

-
-
-
-
-
-

신뢰성 (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신뢰성 (Reliability)이란 어떤 제품 등이 규정된 조건(환경)하에서 정해진 기간(시간, 거리 사이클 등) 동안 의도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성질을 의미

※ 공인된 전문 신뢰성 시험기관을 통한 개발제품의 ① 환경(내구성) 시험, ② 수명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서술

-
-
-

-
-
-

7-1-3.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

※ 참여기업(및 조합 회원사)이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제품 양산계획(필요시, 기술개발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

-
-
-

판로확보 및 마케팅 계획(필요시, 기술개발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

-
-
-

7-2.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 ※ 참여기업이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판매처	국가 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7-3. 사업화 계획

- ※ 다음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사업화실적 평가기준이 됨에 따라 신중히 작성

구 분	사업화 년도		
	()년 (개발종료 해당년)	()년 (개발종료 후 1년)	()년 (개발종료 후 2년)
사업화 제품			
투자계획(백만원)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수 출		
	계		
수입대체효과(백만원)			
고용 창출(명)			

7-4. 협동조합(회원사)을 통한 보급·확산 계획

- ※ 보급된 기술의 보급·확산 계획이 사업성 검토의 평가기준이 됨에 따라 신중히 작성
- ※ 본 과제 참여 관련 조합 이사회(또는 조합 내 기술위원회) 의결서를 별도로 첨부

회원사의 사업참여도

-
-
-

기술개발 이후 협동조합을 통한 보급·확산 계획

-
-
-

[별지 제1-②호] 중소기업경영현황표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1-1.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주요 매출품목에 주요 사업내용을 표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에 표기

구 분		업체 명	○○○○○(주)(20 년 결산기준)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수출액(만불)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영혁신형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녹색인증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녹색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그린비즈 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장애인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작성요령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대표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최신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참여기업 경영 현황

※ 주관기관 경영현황표 양식에 준하여 참여기업별로 작성

※ 참여기업은 주요 매출품목에 주요 매출품목 표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에 표기

[별지 제1-③호]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Part I의 9. 사업비정보의 세부내역 작성)

※ Part I. 9. 사업비정보 라) 비목별 총괄의 합산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불일치 작성시 감점 요인 및 불이익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입력된 사업비 합계와 아래의 소요명세의 합계가 틀릴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세목별 총괄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연차별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위탁연구비 (해당시)	소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1차년 합계				
2차년도 (20)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위탁연구비 (해당시)	소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2차년 합계				
3차년도 (20)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위탁연구비 (해당시)	소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3차년 합계				
총 합 계				

2.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필요시 참여기업을 추가하여 전체 참여기업 현황을 명기. 참여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기업명)으로 표기

2-1.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주관 기관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참여기업1 (기업명)	기존 인력								
		신규								
		소 계								
	참여기업2 (기업명) (필요시, 참여기업 추가작성)	기존 인력								
		신규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 과제책임자의 경우 참여율이 30%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이어야 함
-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총기술개발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는 총기술개발사업비의 100%까지 계상 가능 (상기, 비특별 총괄의 인건비 부분 참고)
- 신규인력 인건비는 주관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접수마감일로부터 기술개발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한다.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연구원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세 목	산 정 기 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외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기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 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2-2. 직접비 소요명세

구분	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도	비고
주관기관	연구장비·재료비							
	소계	천 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연구활동비							
	소계	천 원						
	연구수당(해당시)							
	소계	천 원						
	주관기관 소계	천 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참여기업1 (기업명)	연구장비·재료비							
	소계	천 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연구활동비							
	소계	천 원						
	연구수당(해당시)							
	소계	천 원						
	참여기업2 (기업명) (필요시, 참여기업 추가작성)	연구장비·재료비						
소계	천 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연구활동비								
소계	천 원							
연구수당(해당시)								
소계	천 원							
참여기업 등 소계	천 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합계	천 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아래의 세부 사용처를 명기
- 또한, 비고란은 사용주체를 명기(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연구장비·재료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수행기관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 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의 50% 이내(지식서비스, S/W, 설계기술 예외)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가)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의 10%이내(연도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출장여비

-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위탁정산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과제선정평가지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3.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주관기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가)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 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다)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 라)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단,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③ 연구개발능력성급 :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급

2. 연구지원비

- ① 기관 공동지원경비 : 기술개발과제에 소요되는 기관 공동지원경비
-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③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2-4.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 (해당시에만 작성)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2-1 내지 2-3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의 정규직원 등 현물로 책정하여야 될 경우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되,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함 ◦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 <p>※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연구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p>

2-4-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구 성 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합 계		100%

2-4-2.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실지급 액 (A)	참여율 (%) (B)	참여기 간(월) (C)	합 계 (A×B×C/100)		
							현 금	현 물	소 계
인건비									
합 계									

2-4-3.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도	비고
직접개발비								
	소계							
기술개발 활동비								
	소계							
연구수당								
	소계							
합 계								

2-4-4.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별지 제1-④호]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① 기자재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국(처)	
⑦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구입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기자재는 모두 작성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본인은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중소기업중앙회)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③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④ 본인은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등으로 업로드

[붙임 1]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연삭/연마 가공기계		인쇄/섬유기계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식품포장기계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건설/광산기계
	수치제어장치		일반가공기계
	프레스 기계		방재소방기계
	사출 기계		운송하역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산업장비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산업/일반기계관련 SW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전기 및 전자장치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차체 및 경량화 기술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공조기술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안전도 향상기술		해양구조물/설비기술
	차량 지능화 기술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해양 환경/안전설비
	시스템 통합기술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보일러/로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유체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수처리 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폐기물 처리설비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대기오염 방지 설비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건조/농축 설비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IBS/HA 시스템 기술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전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구동장치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디바이스
	회전축용 요소부품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배관용 요소부품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유공압 부품		시스템 집적화 기술
	액추에이터		시스템 통합화 기술
	절삭/연삭공구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치공구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금형		
요소부품 관련 SW			
기타 요소부품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금속재료	구조재료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기능재료
	로봇 비전 및 생산자동화 기술		복합재료
	기계 자동화 기술		재료공정기술
	조립/정밀 이송기술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에너지소재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생체재료기술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금속정제/회수기술
	재료분석/평가기술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조/용접	사형주조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금형주조		압출기술	
	특수주조		인발기술	
	다이캐스팅		압연기술	
	주조/용접재료		판재성형기술	
	Brazing/Soldering		분말제조기술	
	아크용접		분말가공기술	
	특수용접/접합기술		소성가공 관련 SW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주조/용접 관련 SW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공정개선기술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도금기술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박막제조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용사기술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에칭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부/방식기술			
	침탄/질화기술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표면물성 개질기술			
	기타 표면처리기술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레이저 가공기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결상기기		조명기기
	광계측·제어기기		소형가전
	광원		백색가전
	광소재		가정용 가스기기
	광부품		냉난방기기
	광소자		자동판매기
	기타 광응용 기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계측기기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노광트랙장비		계측센서 및 부품
	에칭 장비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폴리싱(CMP) 장비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증착장비		환경계측기
	이온주입장비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세정장비		유체 제어계측기
	패키징장비		전자 계측기
	측정/검사 장비		광계측기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기타 계측기기
	기타 반도체장비		
중전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전력변환기기		방송수신기
	전력용 재료		3차원 영상기기
	변압기류		AV재생 및 기록기기
	개폐기류		화상통신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카메라 및 캠코더
	자동화제어기기		전광판
	전기로		휴대용 AV기기
	전선		카 오디오
	초전도 기술/제품		방송 AV기기
	전기용접 및 가열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전원장치		스피커
	에너지저장기기		마이크로폰
	기타 중전기		기타 영상/음향기기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전자	전자재료
	화합물 소자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MEMS 소자		응용 및 활용기술(HEV등)
	Sensor용 소자		일차전자
	반도체 재료		이차전자
	SoC		초고용량 커패시터
	설계 Tool		기타 전자
	기타 반도체 소자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디스플레이	LCD
	PCB 부품		PDP
	커패시터 부품		FED
	자성재료 부품		EL
	기록매체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복합 부품		E-Paper
	초고주파 발생소자		3D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타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기타 디스플레이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RFID/USN	RFID기술
	이동통신 시스템		USN기술
	이동통신 단말기		모바일-RFID
	기타 이동통신기기		활용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SW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U-컴퓨팅	RFID/USN서비스
	디지털 방송 매체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서버기술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소프트웨어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임베디드 SW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SW솔루션
	디지털 방송 단말		System Integration
위성-전파	위성통신·방송 전송	디지털 콘텐츠	Internet SW
	위성통신·방송 단말		컴퓨터 그래픽
	위성항법		가상현실
	탐제체 및 관제		콘텐츠 창작 기획
	EMI/EMC	정보보호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전자파기기		게임 및 u-러닝
	전자파 진단 및 방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공통 보안기술
	지능형 정보가전		산업보안 및 융합보안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홈네트워크 정보보호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ITS/텔레매틱스	광통신모듈및부품
	전달망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가입자망		안테나 모듈 및 부품
			ITS 단말 및 기기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의약제제		토양오염 방지기술
	농약 중간체/원제		해양오염 방지기술
	농약제제		환경설비 기술
	염/안료 및 중간체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계면활성제		기타 환경산업기술
	윤활유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첨가제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도료/코팅제		유리, 유약, 법랑
	접착제/실란트		도자기, 타일 등
	유·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단결정
	감광재료		세라믹제조공정기술
	화장품/소재		화학·생체 기능재료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광·전자세라믹스
	나노응용기술		고강도·열 기능재료
기타 합성응용제품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섬유제조	중합개질
	개질기술		섬유방사
	복합재료제조기술		천연섬유방직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사가공기술
	의료용 소재기술		제직기술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방사설비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사가공설비
	고분자 재활용기술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고분자가공기술		나노섬유제조기술
	나노소재기술		제직설비
	기타 고분자 재료		기타 섬유제조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염색가공	침염기술
	촉매 응용기술		날염기술
	공정시스템기술		사염기술
	공정설비기술		가먼트염색기술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물리·화학적 가공기술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염색설비
	기타 화학공정		가공설비
화학제품	제지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인조피혁		부직포가공기술
	천연피혁		봉제기술
	고무(타이어포함)		의류패션
	기타 화학제품		편직기술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섬유제품	섬유제품설비
	대기오염 방지기술		산업용섬유제품
	환경설비기술		나노섬유제품기술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융합섬유제품
	기타 환경산업기술		기타 섬유제품기술

<대분류: 바이오·의료>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치료용항체		방사선치료기
	백신		수술용 치료기기
	효소의약품		수술용 로봇
	바이오인공장기		한방용 치료기기
	세포 및 조직치료제		기타 치료기기
	유전자의약품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저분자의약품		한방용 진단기기
	천연물의약품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약물전달시스템		분자유전진단기기
	시약/진단체		초음파진단기기
	바이오생체재료		X-ray 및 CT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MRI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바이오플라스틱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미생물 및 효소축매		신체 기능 복원기기
	기능성 바이오소재		임플란트
	바이오화장품/소재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기능성 식품소재		생체재료
	바이오환경		의료용 소재
	바이오매스		재활훈련기기
	바이오농축수산제제		이동지원기기
	기타 산업바이오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바이오전자/정보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바이오공정장비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바이오분석기기		의료정보표준화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대분류: 에너지 · 자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실가스처리	CO ₂ 포집기술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CO ₂ 전환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CO ₂ 저장기술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non-CO ₂ 처리기술		직류 송·배전 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자원	자원조사·탐사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석유·가스 개발		원전 안전평가 기술
	광물자원 개발		방사선 관리 기술
	자원 활용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원전계측·제어기술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발전설비/기기개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첨단 발전제어 기술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가스터빈 기술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발전설비 운영 기술		신원전 기술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신재생 에너지
	전력계통 계획 기술	태양광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바이오연료	
	전력시장 운용 기술	폐기물	
	수요예측관리 기술	소수력	
	송·변·배전 시스템 기술	풍력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해양	
	전력용 신소재 기술	지열	
	전력전자 기술	수소	
	전자계 환경 기술	연료전지	
	전기안전기술	석탄가스화/액화	
	합성연료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서비스표준화/ 품질관리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전자무역서비스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제품품질 관리기술		문화의류환경반차표현지능형응용서비스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여측영향/관리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기술		
	시각·포장디자인기술		
	디자인·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공예디자인기술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붙임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요령 제9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